

수원지방법원 2017. 10. 12 선고 2017가단700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---

## 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7. 9. 7.

판결 선고 2017. 10. 12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C 답 407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㎡, 용인시 기흥구 D 전 268㎡ 중 별지 도면 표시 8, 9, 15, 14, 13, 12, 11, 10,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7㎡, 용인시 기흥구 E 답 255㎡ 중 별지 도면 표시 4, 5, 6, 7, 8, 9,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7㎡, 용인시 기흥구 F 대 775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4, 15, 21, 19, 18, 17, 16,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29㎡, 용인시 기흥구 G 대 1,512㎡ 중 별지 도면 표시 20, 21, 22, 23, 24,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31㎡, 별지 도면 표시 25, 26, 27, 28, 29,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20㎡<sup>2</sup>, 별지 도면 표시 30, 31, 32, 33,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3㎡ 지상 각 건축물을 철거하고, 위 ㄱ, ㄴ, ㄷ, ㄹ, ㅁ, ㅂ, ㅅ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청구의 표시

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 답 407m<sup>2</sup>, D 전 268m<sup>2</sup>, E 답 255m<sup>2</sup>, F 대 775m<sup>2</sup>, G 대 1,512m<sup>2</sup>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, 피고는 위 각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 부분 지상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위 각 ㄱ, ㄴ, ㄷ, ㄹ, ㅁ, ㅂ, ㅅ 각 토지 부분을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건축물을 철거하고,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### 2. 공시송달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조영은

별지